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34824
등록일자	2015.8.31.
결재일자	2015.9.1.
공개구분	부분공개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이철규	정재하	박선옥	전결 09/01 김효길		
협조자					

-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른 -

2015년 하반기 저소득 주민 부가급여 지원사업 변경 계획

- 계획변경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급여 체계 도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던 市 재배정 사업의 대상자 범위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로 조정하고자 함
 - (기존)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맞춤형급여 시행)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서울시 복지정책과-14940(2015.6.8.)호 : 붙임 참조
- 사업기간** : 2015.7.1. ~ 2015.12.31.
- 지원대상** : 6,330가구(수급자 6,093가구, 저소득보훈대상자 237가구)
- 지원내용**
 - 교통비
 - 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중 교육급여 수급자 중 · 고등학생
 - 기준 및 시기 : 1인당 311,040원(연4회 분할 지급)
 - 명절위문금(추석)
 - 대상및기준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3만원
 - 월동대책비
 - 시기 : 연 1회(11월)
 - 대상및기준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보훈대상자 가구당 5만원
- 소요예산** : 시비 612,387천원

강 남 구
(사 회 복 지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기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 수준을 위해 법정급여외 경비를 추가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 교육급여 수급자(중·고학생)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O)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업
전문가 자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른 -

2015년 하반기 저소득 주민 부가급여 지원사업 변경 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급여 체계 도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던 본 사업의 대상자 범위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로 조정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시 복지정책과-14940(2015.6.8.)호/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 개선 계획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금전 또는 물품 지원

II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5. 7. 1. ~ 2015. 12. 31.
- 맞춤형급여 시행 시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28% 이하	40% 이하	43% 이하	50% 이하
'15년 최저생계비 대비	71% 수준	101% 수준	109% 수준	127% 수준

○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로 조정

기 준	맞춤형급여 시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맞춤형급여 시행 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 100% 수준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 수급자 : 6,093가구
 - 중·고 재학생 : 770명(중학생 323명, 고등학생 447명)
 - 저소득 보훈대상자 : 237가구 내외(서울지방보훈청 추천)

□ 대상별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지 원 기 준	비 고
교육경비	의료생계급여수급자 자녀	교통비(중고등학생) (3월, 6월, 9월, 12월)	1인당 연 311천원 (720×2회×216일)	
명절위문금	기초수급자(일반특례)	추석 위문금 (9월)	가구당 30천원	
월동대책비	기초수급자(일반특례)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50천원	

2014년 부가급여 지급현황 ----- 891,666천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지원액(천원)	비 고
교육경비	2,849명 (평균 712명)	중·고생 교통비 (3, 6, 9, 12월)	225,516	
	신입생 349명 (평균 175명)	중·고 신입생 (2, 4월)	51,400	
명절위문금	10,417세대 (평균 5,209세대)	설날, 추석 위문금 (1, 9월)	322,500	
월동대책비	5,824세대	월동대책비 (11월)	291,250	

2015년 부가급여 지급현황 ----- 355,336천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지원액(천원)	비 고
교육경비	1,460명 (평균 730명)	중·고생 교통비 (3, 6월)	119,836	
	신입생 452명 (평균 226명)	중·고 신입생 교복비 (2, 4월)	67,800	
명절위문금	5,590세대	설날위문금 (2월)	167,700	

III 추진계획

□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
 - ※ 특례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1인당 연 311,040원
 - ※ 교통비 : 720원(교통카드 사용기준)×2회× 216일 = 311,040원
 - ※ 지원일수(216일) 산출내역 : 190일(권장 수업일수)+(52일(연간 토요일 일수)×50%)
 - ※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타시도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당해 분기 지원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휴학,자퇴,퇴학 등으로 급여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분기의 지원액은 월할계산 반납처리

< 교통비 지원일수 산정방법 >

- 중·고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으로 등교일수 감소 (240일 ⇒ 190일)
- 법정 수업일수(주5일제 전면 실시) : 연 190일 이상(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 ※ '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권장 수업일수 : 연 190일 이상
- 방학기간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므로 학교별로 동일하지 않음
- 주5일제 수업 시행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토요프로그램(월 2~3회 시행) 적극 참여 권장코자 연간 토요일(52일)의 50% 교통비 지원

- 지원시기 : 연 4회 분기별 지급 (3, 6, 9, 12월)

구분	계	1분기 (3.1~5.31)	2분기 (6.1~8.31)	3분기 (9.1~11.30)	4분기 (12.1~익년2월말)
중·고등학생 (교통비)	311,040원 (720원×2회×216일)	99,360원 (720원×2회×69일)	64,800원 (720원×2회×45일)	97,920원 (720원×2회×68일)	48,960원 (720원×2회×34일)

- 지급방법 : 재학 여부 확인 후 수급자 또는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56,549천원
 - 720원×770명×102일 = 56,548,800원

□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
 - ※ 입양대상아동(일반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가구당 30천원
- 지원시기 : 추석
 - 추석(9.8) : 9.21(지급기준일 9.14 이후 9.27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182,790천원
 - 30,000원×6,093가구×1회 = 182,790,000원 (시비 100%)

□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일반·특례) 6,093가구(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저소득 보훈대상자(10~12등급)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통보자(237가구 내외)

※ 추천요청(시→서울지방보훈청, 10.15) □ 명단통보(보훈청→시, 11.5)

▶ 자치구 통보(시→구, 11. 9) □ 자격확인 후 지급(11.17)

-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중복지원 안됨) 및 타시도 전출자 제외
- 지원기준 : 가구당 50천원
- 지급일자 : 11.17(지급기준일 11. 1 이후 11.17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 지급기준일 11. 1이후 11.17까지 타 시도 전출 및 사망자 지급 제외
-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지원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316,500천원
 - 50,000원×6,330가구×1회 = 316,500,000원

□ 예산과목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IV 행정사항

-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중복 또는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관리 철저
 - 중·고 재학 여부 확인 철저

-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월동대책비의 경우 동일가구에 이중(중복)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 확인
- 추진일정에 따라 예산재배정 요청, 급여지원 및 결과보고
- 급여개시일 등 부가급여 지원과 관련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
- 하반기 급여별 추진일정

연번	사업명		지급 기준일	수요파악 (예산요청)	예산 재배정 시 → 자치구	지 원 자치구 → 수급자	결과보고 자치구 → 시
				자치구(보훈청) → 시			
1	중·고생 교통비	3분기 (9~11월)	'15. 9. 1	'15. 9. 4	'15. 9. 14	'15. 9. 18	'15. 9. 25까지
		4분기 (12~2월)	'15. 12. 1	'15. 12. 4	'15. 12. 14	'15. 12. 18	'15. 12. 28까지
2	명 위 문 품 비	추석(9. 27)	'15. 9. 14	'15. 9. 16	'15. 9. 18	'15. 9. 22	'15. 10. 8까지
3	월 대 책 비	겨울철 (11월)	'15. 11. 1	'15. 11. 5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 추천)	'15. 11. 12	'15. 11. 17	'15. 11. 27까지

※ 상기 일정 및 하반기 지원계획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시행될 수 있음

붙임 : 서울시 부가급여 지원 사업 변경 계획 1부. 끝.